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279

발의연월일: 2025. 1. 7.

발 의 자:정일영·한정애·김영환

김종민 · 강유정 · 진성준

임호선 • 박상혁 • 김문수

임광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의장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음.

그런데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이미 만료된 바 있고, 최근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원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원격영상회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. 아울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원격영상회의 개의 요건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신속한 표결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고,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요건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'합의'가 아닌 '협의'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려는 것임 (제73조의2 삭제, 안 제73조의3 신설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의2를 삭제한다.

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3(원격영상회의) ① 의장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, 「계엄법」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의 선포,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 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(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.

-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.
-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.
-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,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

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.

-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 야 한다.
-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	정	안	
제73조의2(원격영상회의) ① 의장	<u><</u> 삭	제>			
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					
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					
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					
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					
<u>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</u>					
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					
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					
의를 원격영상회의(의원이 동					
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					
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					
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					
의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					
같다)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					
<u>다.</u>					
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					
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					
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					
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					
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.					
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					
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					
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					

표결할 수 있다.

-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,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수있다.
-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 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 영하여야 한다.
-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73조의3(원격영상회의) ① 의장은 다음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, 「계엄법」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이 나 경비계엄의 선포, 천재지변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

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 영상회의(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.

-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에도 불 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 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 한다.
-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협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.
-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,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
- ⑤
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

 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

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

- 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.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수 있다.
-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 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 영하여야 한다.
-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